

예산총칙

제 1 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4,047,941,440	121,292,060
일	반 회 계	3,449,805,948	103,348,000
특	별 회 계	598,135,492	17,944,060
	기 타 특 별 회 계	351,645,001	10,549,350
	농 어 촌 주 택 사 업	11,021,000	330,630
	의 료 급 여 기 금	320,234,001	9,607,020
	동 부 권 특 별 회 계	20,390,000	611,700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246,490,491	7,394,710
	지 역 개 발 기 금	246,490,491	7,394,71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“채무부담행위조서”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,775,545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